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에 關한 考察

金 斗 弘

I. 序 論

A.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意義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이나 教育的 價値에 對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많은 機會에 主張하여 왔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이나 價値를 切實히 認識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다. 學校圖書館의 具體的인 諸目的을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그 目的들이 導出되는 보다 根本的인 哲學을 理解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이러한 哲學的 貧困의 狀況下에서는 學校圖書館運動이나 學校圖書館行政이 올바른 姿勢와 方向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예 期待하지 말아야 한다.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을 考察하기에 앞서서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意義에 對하여 새삼스럽게 言及하고 작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 學校圖書館設置의 必要性

數世紀 以來 人類의 文化는 加速的으로 發達하여 와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發達速度가 거의 폭발력을 지니게끔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을 世人들은 知識의 폭발시대라고 命名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와 같은 時代에 處해서 如前히 한 사람의 教師가 한 간의 教室에서 한 권의 教科書 만으로 後代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시대착오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오늘날 教師는 自己自身과 教科書와 그리고 教室內에서의 學習의 制限性을 理解하고 學生들에게 보다 넓은 知識의 源泉에 接近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며 거기에 自由自在로 接近할 수 있는 方法을 가르쳐 주어야 하거니와, 이 일을 위하여서는 事前에 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마련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學校圖書館인 것이다.

學校圖書館은 實로 이와 같은 時代의 要求에 立脚한 必然的인 所産인 것이다. 다음의 두 證言을 들어보기로 하자.

“文化的 發達이 日進月步 그 速度를 가하고 있으므로 過去와는 달리 今日的 文化社會의 成員에게 要求되는 經驗의 質은 극히 高度化하여 반드시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접촉할 수 있는 教師에게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文化的 源泉에 直接 파고들 것이 要求되고 있다.”¹⁾

“오늘날 知識의 分量은 너무나 방대하여져서 教室에서 행하여지는 學習指導의 範圍內에서는 그 學習指導가 실령 아무리 優秀할지라도 철저히 다 다루어질 수는 없게 되었다. 學校圖書館을 통하여 이러한 制限된 學習指導의 範圍는 모든 知識의 領域과 모든 創造의 表現形式에 있어서 無限히 擴大될 수 있는 것이다.”²⁾

우리는 지금 教室이 不足하여 一部地域에서는 한 學級을 80名으로 編成하고 있으나, 그래도 不足教室數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不足한 教室을 補充하는 것이 教育行政의 急先務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위에 引用한 證言들로 미루어볼 때 圖書館은 教室 못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圖書館은 단순히 教室 못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없이는 教室과 教師와 教科書가 그 意味를 많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教材의 範圍를 한 권의 教科書에 限定시키거나 教師의 個人的 資質에 依存하는 따위는 意味가 없게 된 것이다.”³⁾

2. 學習指導法의 改善과 圖書館教育

光復後 우리 教育界는 즐기치게 學習指導法의 改善을 高唱하여 왔다. 그리하여 거의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의 改善方案이 提示되어 왔다. 이러한 方案들 중에는

1) 日本·圖書館教育研究會, 編. 學校圖書館資料의 選擇. 東京, 學藝圖書, 1955. p.17.
2)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compl.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1960. p.4.
3) 日本·圖書館教育研究會, 編. 上揭書, p.17.

教育現場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버림받은 것도 있으며, 얼마동안 머문 것도 있고 이내 사라진 것도 있거니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視聽覺教育和 圖書館教育的 두 가지 方法이다. 이 두 가지 方法이 남게 된 것은 잘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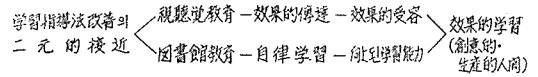
우리의 學習指導法の 改善의 目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보다 많은 것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正確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學生들의 學習하는 能力 그 自體를 보다 次元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學習指導法の 改善의 目標 가운데 前者는 視聽覺教育의 方法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으며, 後者는 圖書館教育의 方法에 의하여 達成될 수 있다.

즉, 視聽覺教育의 方法을 통하여 能率의 效果的인 傳達와 受容을 可能하게 하며, 圖書館教育의 方法을 통하여 自律學習을 助長하고 그로써 學習者에게 自力으로 學習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쉽게 正確하게 가르칠 수 있는 視聽覺의 方法을 學習指導에 導入하는 것은 現代教育이 切實히 要求하는 바이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에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限界內의 것 마저도 學習者가 全部 記憶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學習者가 將次 어떤 問題에 當面하였을 때 그 問題의 解決에 관련된 情報(知識)를 能率의 效果的으로 檢索해내는 方法을 가르쳐주는 圖書館教育을 實施하게 되는 것은 必然的인 歸結이라고 할 것이다.

“人間的 知識의 限界가 加速的으로 擴大되어감에 따라, 어떤 主題分野에 있어서 이미 개척된 知識의 總量에 대한 한 사람이 所有할 수 있는 知識의 量의 비율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學問分野에 관한 知識에 通達하는 次善의 길은 그 知識을 어디서 얻어낼 것인가를 알아두는 것이라고 하여도 결코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圖書館을 自信 있게 效果的으로 利用할 줄 아는 方法을 배운 사람은 限界 없는 知識의 世界에 이르는 열쇠를 손에 쥔 셈이다.”⁴⁾

以上으로써, 視聽覺教育의 方法과 圖書館教育의 方法이 學習指導法の 改善作業에 있어서 각기 차지하는 位置를 대충 說明하였거니와, 이 兩者를 두르는 選擇이 있을 수 없고 또한 先後가 있을 수 없다. 兩者를 同時에 併用함으로써만 우리 教育의 最大課題인 學習指導法改善의 實現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學習指導法の 改善을 위한 이와 같은 “視聽覺教育的 · 圖書館教育의 方法”을 筆者는 “學習指導法改善의 二元的 接近”이라고 불러보기로 한다.

B. 本考察의 目的과 方法

1. 目 的

앞 節에서 筆者는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價値에 대하여 극히 根本的인 것만을 들어서 간략하게 言及하였다. 이 程度의 이야기 만으로써도 學校圖書館이 現代教育에 있어서 必須的인 存在라는 것을 알 수 있거니와, 그처럼 重要한 學校圖書館이 오늘날 우리가 期待하는 速度로 發達하지 못하고 있는 原因은 무엇일까?

筆者는 그 原因의 大部分이 學校圖書館行政의 貧困에서 오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하여, 이 學校圖書館行政의 貧困이 어떤 樣相을 띠고 있으며, 어느 程度로 심각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本考察을 試圖하여 보는 것이다.

本考察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 ① 學校圖書館의 設置現況에 나타난 問題點을 學校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諸法令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 ② 學校圖書館行政을 위한 組織狀況을 觀察하고 거기에 나타난 問題點을 찾아낸다.
- ③ 司書教師의 配置狀況을 살피고 그에 따른 問題點을 찾아낸다.

2. 方 法

筆者는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을 考察함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에 관련된 諸法令을 찾아내어 學校圖書館의 現況과 行政現實을 그 찾아낸 法令에 비추어서 해석을 내려보고자 한다.

II. 學校圖書館行政上的 諸問題

A. 圖書館設置現況과 問題點

1. 設置現況

a. 最近의 統計資料에 의하면, 우리나라 初·中等 學校 總數 8,134校 中 圖書館을 設置하고 있는 學校는

4) Harry L. Nicholson, and Sirion P. St. John. "Forword" in *Integrating Library instruction with Classroom teaching at Plainview Junior High School*, by Elsa Bern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8. p.iii.

4,276校로서 그 비율은 51.3%로 되어 있다.(表-1 參照)

b. 中學校가 同系 高等學校와 併設되어 있고, 同時에 圖書館을 高等學校와 共同使用하고 있는 곳이 509校 이므로, 이 數를 圖書館設置校 總數에서 減한 것이 實際 圖書館數 (4,276-509=3,767)이며, 이는 全體 學校數에 대한 46.3%에 不過하다.

<表-1> 學校數와 圖書館數의 對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合 計
學 校 數※	5,810	1,463	861	8,134
圖 書 館 數※※	2,470	※ 1,036 ※※ (509)	769	4,276
圖書館設置校의 비율(%)	42.5	70.9	89.3	51.3

資料: ※ 문교부, 편, 문교통계연보. 서울, 동부, 1969. 에 의함.

※※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圖書館一覽. 서울, 同協會, 1969. 에 의함.

※※※ 中學校 圖書館數 1,036 中에는 同系高等學校와 共同使用하고 있는 509個館이 包含되어 있음.

c. 그리고, <表-1>에 記載된 圖書館數는 圖書館(室)이 따로 設置되어 있지 않고 어떤 學級의 教室이나 其他施設을 兼用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藏書가 500卷 以上 될 때에는 1個의 圖書館으로서 간주하여 集計한 것이므로,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館 專用으로 設置된 數는 그 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

<表-2> 專用圖書館數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合 計	學校總數에 대한 비율 (%)
305	207	493	1,005	12.3

따라서 우리나라 初·中等學校의 實質的인 圖書館數는 1,005個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學校總數의 12.3%에 不過하다.

2. 關係法規

a. 圖書館法

圖書館法⁵⁾에 學校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第25條(設置)①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實業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

②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는 따로 令으로 定한다.

b.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法施行令⁶⁾ 第2條 2項에는, “法 第25條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는 따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c. 學校施設·設備基準令

學校施設·設備基準令⁷⁾ 中에서 關聯條項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第5條(校舍)① 校舍는 學習과 保健·衛生上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施設을 두어야 한다. 다만, 教育에 支障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나의 施設을 다른 施設로 兼用할 수 있다.

1.-4. (省略)

5. 圖書室

6.-12. (省略)”

2) 同基準令 第16條: 新設學校는 設立當時에 적어도 이 基準令에 定한 바 1/3의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그 殘餘施設은 文教部令으로 定하는 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따라 補充하여야 한다.

3) “附則② 이 令 施行 당시의 學校로서 그 施設·設備가 이 令에 의한 施設·設備基準에 未達하는 學校는 文教部令으로 定하는 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따라 施設·設備를 補充하여야 한다.

附則③ (違反者에 대한 措置) 學校의 設立認可廳은 前項의 年度別 施設補充計劃에 따라 해마다 그 施設·設備 完備措置를 하지 아니 하는 學校에 대하여서는 學級數의 減縮 또는 學生募集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d.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 및 附則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관한 件>⁸⁾ 가운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別表 1) 學校施設·設備基準令 第1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施設補充計劃

開校후 1年이내 開校후 2이내

令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殘餘施設 70% 100%

(別表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 附則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施設補充計劃

地域別 施設·設備 1968年 1969年 1970年

서울特別市 體育場·校舍地 80% 100%

校 舍·기타施設·100%
設備

5) 圖書館法: 法律第1,424號, 1963. 10. 28. 公布.

6) 圖書館法施行令: 大統領令 第2,086號, 1965. 3. 26. 公布.

7) 學校施設·設備基準令: 大統領令 第3,253號, 1967. 10. 26. 公布.

8)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관한 件: 文教部令 第201號, 1968. 10. 17. 公布.

地 域 別	施 設·設 備	1969年	1970年
釜山市·仁川市 大田市·大邱市 全州市·光州市	體育場·校舍垜地	80%	100%
	校舍·기타施設設備	100%	
其他地域	施設·設備	80%	100%

3. 問題點

a. 圖書館法 第25條에서 볼 때, 學校圖書館(室)의 設置는 單純한 勸獎規定이 아니고 義務規定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學校는 마땅히 圖書館(室)을 設置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國家의 意思를 背反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表-1>에 의하면, 圖書館을 設置하고 있는 學校가 全體 學校數의 折半 (4,276校=51.3%)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表-2>에 의하면, 圖書館(室)을 다른 用途에 兼用하고 있는 學校가 大多數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圖書館(室) 本來의 目的에만 使用되고 있는 實質的인 圖書館(專用圖書館)은 1,005個館에 不過하며, 이는 初中等學校 總數의 12.3%에 該當하는 것이다.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서 學校의 한 施設을 다른 施設로 兼用하는 것을 許容하고 있으나, 그것은 教育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의 일인 것이다. (同基準令 第5條①)

學校圖書館은 奉仕機能 외에 教育機能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입을거리를 갖추어서 그것을 손쉽게 提供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各種 圖書館用具와 資料를 能熱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訓練하는 教室 또는 實習場으로서의 圖書館施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學校의 基礎的 設備로서의 學校圖書館은 奉仕機關과 教育機關의 두 가지 機能을 가지고 있다. 前者는 教育 活動을 支援하는 資料의 供給源으로서 活動하는 것이며, 後者는 그 自體가 直接 教育의 場으로서 일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圖書館(室)이 다른 用途에 兼用된다면 教育의 支障이 많으므로 모든 學校는 專用圖書館(室)을 갖추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b. 圖書館法에 의하면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하기로 되어 있으며, 同法施行令에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을 다시 各級學校의 施設基準令에서 定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을 보면 그 第5條에 校舍 안에 갖추어야 할 最小限의 施設設備으로서 12種을 들고 있으며, 그 가운데 “圖書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學校의 規模에 따른 圖書室의 規模는 同基

準令의 어느 곳에도 規定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가령 30學級이나 되는 學校가 6學級 밖에 되지 않는 學校에 適合한 規模의 圖書室을 設置하여도 問責할 수 없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 分明하다. 6學級의 學校에 適合한 圖書室(室)은 30學級의 學校에 있어서는 거의 效用性이 없는 것이다.

c. 圖書館法에서 學校圖書館의 設置를 義務化하고 있는 點에 대해서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거니와 그렇다면 그 時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文教部令으로 나온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의하면, 新設學校는 開校後 2年內에, 既存學校는 서울의 경우 68년까지, 釜山을 비롯한 6大都市의 경우 69년까지, 그리고 其他地域은 70년까지 學校施設·設備 基準令에 定해진 모든 施設設備을 完成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7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初·中等學校(다만 68年末 以前에 設立된 學校)는 圖書館(室)을 갖추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오거니와 現在의 設置狀況을 감안할 때 그 可能性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d. <圖書館法>이 公布된 것은 1963年 10月, <圖書館法施行令>은 1965年 3月, <學校施設·設備基準令>은 1967年 10月 그리고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은 1968年 10月에 各各 公布되었다.

여기서 하나의 重大한 問題를 發見하게 되는데, 그것은 圖書館法이 公布된 滿 5年 後에야 비로소 施行上의 實質的인 拘束力을 가진 法令(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관한 件)이 마련되었다는 事實인 것이다.

國會에서 國家의 意思決定이 내린 滿 5年 만에 비로소 實質的인 行政措置가 取해졌다는 것은 아무리 善惡로 해석하여도 行政當局이 怠慢의 嫌疑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B. 行政組織上의 問題點

1. 學校圖書館行政을 위한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職制

學校圖書館行政이 어떠한 組織體系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文教部 및 市·道教育委員會의 關係部署를 概觀하기로 한다.

a. 文教部

文教部 本廳은 企劃管理室, 獎學室, 總務課, 普通教育局, 高等教育局, 編修局, 科學技術教育局 및 社會教育局으로 組織되어 있다.

이 가운데, 圖書館行政의 主務局은 社會教育局이며, 主務課·係는 社會教育課 成人教育係이다.

9) 日本·圖書館教育研究會, 編. 前掲書, p. 9.

獎學室은 學校圖書館行政에 대하여 多少의 影響力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라인(line) 機關이 아니고 스태프(staff) 機關이므로 行政的 파워(power)를 가지고 있지 않다.

b.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下部組織은 庶務課, 學務局 및 管理局으로 되어 있다.

學務局 아래 初等教育課, 中等教育課 및 文化·體育課가 있는데, 이 中 圖書館行政을 맡은 部署는 文化·體育課이다.¹⁰⁾ 文化體育課 외에 初等教育課에서 學級文庫의 指導를 하도록 規定되어 있다.¹¹⁾

c.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의 下部組織에는 學務局과 管理局이 있고, 學務局 아래 初等教育課와 中等教育課가, 管理局 아래 文政課와 財務課가 있다.

이 가운데, 圖書館行政을 맡은 部署는 管理局의 文政課이다.¹²⁾

그리고,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경우와 같이 初等教育課에서 學級文庫의 指導를 맡고 있다.¹³⁾

2. 問題點

a. 文敎部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文敎部에는 學校圖書館에 관한 限 行政不在라고 할 수 있다.

圖書館行政을 맡은 部署가 社會教育局의 社會教育課 成人教育係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學校圖書館行政 역시 여기서 管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成人教育을 맡은 한 部署가 學校教育行政의 一部인 學校圖書館行政을 主管한다는 것은 原理上 違背될 뿐만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 成人教育係의 行政行爲 가운데 直接的으로 學校圖書館을 위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즉, 成人教育係에서 圖書館事業에 關聯하여 年例의 으로 實施하고 있는 事項은 圖書館協會에 대한 國庫補助, 圖書館協會와 共同主管하는 讀書週間行事 및 圖書館協會를 통한 學校圖書館實態調查¹⁴⁾ 밖에 없다.

b.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圖書館行政 主管部署는 學務局的 文化·體育課이다.

職制上으로, 初等教育課에서는 學級文庫의 指導 단이라도 맡고 있으나, 中等教育課의 所管業務 가운데는 그것마저도 包含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學級文庫의 指導를 除外한 圖書館行政 全般(學校圖書館行政 包含)을 文化·體育課가 主管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거니와, 行政書記官이 指揮하는 文化·體育課에서 學校圖書館의 指導監督을 行할 能力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實際에 있어서 文化·體育課의 學校圖書館을 위한 行政行爲로서는 學校圖書館實態調查, 讀書週間行事, 圖書館週間行事 등에 관한 文敎部の 公文을 管下校에 이첩하는 것 밖에는 없다.

c.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

釜山市와 各道教育委員會의 圖書館行政主務課는 管理局의 文政課이다. 學務局的 初等教育課에서는 “學校文庫”¹⁵⁾의 指導를 맡고 있다.

따라서, 學校圖書館(室)에 관한 行政은 職制上으로는 역시 文政課(課長은 行政事務官)에서 管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學校圖書館行政을 非教育專門家들에게 맡기고 있는 不當性에 있어서 서울市敎委會의 경우와 一致할 뿐만 아니라, 서울市敎委會에 있어서는 비록 文化·體育課가 學校圖書館行政을 맡고 있기는 하나 同課는 學務局(局長은 獎學官) 아래 예속되어 있는데 대하여, 釜山市·道敎委會에 있어서는 管理局(局長은 行政書記官) 아래 있는 文政課에서 學校圖書館行政을 맡고 있는 터이니, 職制上으로는 釜山市·道敎委會가 서울市敎委會에 비하여 더욱 專門的管理的 原理에 違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道敎委會에 있어서 學校圖書館行政業務를 初等教育課(國民學校圖書館·室)와 中等教育課(中·高等學校圖書館·室)에 負課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職制上的 모순을 現實에 쫓아서 臨時로 解決하고 있는 것이다.

C. 司書教師管理에 관한 問題

1.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의 不足

여기서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라고 함은 學校圖書館

10) 서울特別市·釜山市·道の 教育委員會職制 (大統領令 第2,963號, 1967. 3. 27.) 第5條 ⑤-4.

11) 上揭職制, 第5條 ③-7.

12) 上揭職制, 第9條 ③-35.

13) 上揭職制, 第8條 ③-7.

14) 學校圖書館實態調查는 圖書館協會의 提請으로 同協會에서 作成한 樣式에 의하여 實施되며, 調査書의 綜合, 集計編輯, 發刊까지도 同協會에서 맡고 있다. 文敎部는 다만 長官名義의 公文을 市·道敎委會에 下達하고 있을 뿐이다.

15) 서울特別市·釜山市·道の 教育委員會職制 第5條 ③-7에 있어서는 “學級文庫”로 表現되어 있으나, 第8條 ③-7에 있어서는 “學校文庫”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表現은 서로 다르나 두 用語가 같은 뜻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 같다.

奉仕에 관한 教育 또는 講習을 240 時間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240 時間의 教育 講習이 充分하고 아니하고는 별개의 問題로 삼고 一般教師로서 司書教師資格을 取得하려면 現行法令上 240 時間 이상의 圖書館學講習을 이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 時間數를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의 基準으로 삼은 것이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의 數는 初中高를 합하여 483명에 불과하며, 더욱이 國民學校의 경우에는 學校數의 0.3%, 그리고 圖書館數의 0.8%에 해당하는 20명의 有資格教師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表-3>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 分布狀況

	學校數(A)	圖書館數(B)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數(C)	$\frac{C}{A} \times 100$	$\frac{C}{B} \times 100$
國民學校	5,810	2,470	20	0.3	0.8
中學校	1,463	1,036	162	11.0	15.6
高等學校	861	769	301	34.9	39.1
합 계	8,134	4,276	483	5.9	11.3

형편이 좀 나은 高等學校의 경우를 보더라도 學校數의 34.9%, 그리고 圖書館數의 39.1%에 해당하는 301명의 有資格教師가 配置되어 있는 한심한 實情에 있다.

學校圖書館은 圖書館施設, 圖書館資料 및 圖書館職員의 三要素로써 構成되어 있으므로, 이들 要素 가운데 한 가지를 缺하여도 完全한 圖書館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圖書館資料를 不問에 불인다고 하더라도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圖書館數는 有資格教師가 配置되어 있는 483個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2. 司書教師의 T/O 配定에 관한 問題

圖書館法 第6條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1項에는 “法 第6條 第1項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學校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1. 國民學校에는 1인 이상의 司書教師나 1인 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2.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인 때에 1인의 司書教師나 1인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2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司書教師나 2인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위와 같은 法令의 엄연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文教部는 1968년에 33명의 司書教師를 配定하고 있을 뿐

이다.¹⁷⁾

물론 일시에 法條文대로의 司書教師를 配定한다는 것은 教育行財政上 도저히 不可能한 것인 줄 안다. 그러나 前記한 바와 같이 1968년에 33명이나마 司書教師 T/O를 配定하였다가 1969년에 와서는 한 사람도 配定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文教部는 司書教師 T/O에 관련된 法條文을 망각하였거나 아니면 故意로 無視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망각하였거나 無視하였거나 간에 이것은 法治行政의 原理¹⁸⁾를 正面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3. 司書教師의 法的地位에 관한 問題

教育公務員法 第3條 別表1 가운데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에 관한 部分은 다음 <表-4>와 같다.

<表-4> 司書教師資格基準

資格	學校別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司書教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을 專攻하고 所定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 2. 中等學校의 準教師 이상의 資格證所持者로서 所定의 司書教師養成講習을 받은 者.			

이러한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은 상당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니,

첫째, 司書教師는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여 進級の 機會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司書教師 사이에 資格區分이 없다는 것이다.

첫째의 問題를 두고 말한다면, 司書教師는 一般教師의 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一般教師보다 高等의 資格基準을 要求하고 있으면서, 一般教師가 所定의 司書教育을 받은 뒤 司書教師로 任命되면 一般教師보다 格下된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게 되니, 모순된 일이다.

둘째의 問題를 두고 본다면, 中等學校準教師 이상의

16) 240時間 이상의 講習을 이수한 有資格教師가 1개 學校 圖書館에 2명 이상 配置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그 數가 483개館을 下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교령 151-189(68.2.27). 68년도 교원 정원 증원 통보」에 의한.

18) 金鍾喆博士는 우리나라의 教育行政의 基本原理로서 1. 法治行政의 原理, 2. 機會均等の 原理, 3. 適度集權의 原理, 4. 自主性尊重의 原理를 들고 있다. 金鍾喆, 教育行政의 理論과 實際. 서울, 敎學社, 1965. p.44.

資格證 所持者 만이 所定의 講習을 이수한 뒤 司書教師 資格證을 받을 수 있도록 現行法에서 規定하고 있으므로 國民學校의 司書教師 確保는 거의 不可能하다.

이 두 가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現行 司書教師 資格基準을 改定하여 國民學校와 中等學校를 區分하고, 다시 一級正司書教師와 二級正司書教師로 區分하여 一般教師의 基準에 準하여 그 資格을 規定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司書教師가 마스터 키 (master key) 라고 불리고 있는 事實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一般教師가 한 개의 特定한 자물쇠에만 맞는 個別的인 열쇠라고 한다면, 司書教師는 여러가지 子물쇠에 들어맞는 맞 열쇠라는 것이다. 이것은 司書教師가 學校教育活動의 全分野에 걸쳐서 決定的으로 要緊한 구실을 하고 있는 데서 얻은 이름인 것이다.

III. 結 論

A. 圖書館設置現況과 그에 관련된 問題

1. 圖書館法에 의하면 學校에 圖書館을 設置하는 것은 단순한 勸獎事項이 아니고 義務事項으로 되어 있다. (圖書館法第25條) 그럼에도 불구하고 實質的인 學校圖書館數는 初中等學校 總數의 12.3%에 해당하는 1,005 個 館에 불과하다. (表-2 參照)

2.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는 “圖書室”을 設置할 것이 規定되어 있으나 (同基準令 第5條) 學校의 規模에 따른 圖書室의 規模가 規定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무리 큰 學校라도 圖書室의 形態만 갖추게 되면 그로써 問責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文教部令인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에 의하면, 197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初中等學校는 圖書館(室)을 設置하도록 되어 있으나(同令 別表 2), 現在의 設置狀況에 비추어 볼 때 그 可能性은 극히 희박하다.

4. 1963年 10월에 圖書館法이 公布된 以來만 5年 後인 1968年 10월에 施行上의 實質的인 拘束力을 가진 學校年度別施設補充計劃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國家의 意思決定이 있든지 만 5年 만에 그것이 實行될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文教行政의 怠慢性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學校圖書館行政을 위한 組織上의 問題

1. 圖書館行政의 總本山인 文教部에 圖書館行政을 맡은 部署가 따로 없고 社會教育局의 社會教育課成人教育係에서 學校圖書館行政을 包含한 圖書館行政 全般을 管掌하고 있으므로 圖書館事業에 대한 行政的 努力이 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學校圖書館에 대

하여서는 行政不在의 상태에 놓여 있다.

2.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경우에 있어서는 職制上으로 學務局 文化·體育課에서 圖書館行政全般을 主管하도록 되어 있으나 教育專門家가 아닌 行政書記官이 지휘하는 文化·體育課에서 學校圖書館의 指導監督을 行할 能力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實際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을 위한 行政行爲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의 圖書館行政은 管理局의 文政課에서 담당하도록 職制上으로 規定되어 있다.

이러한 職制規定에도 불구하고 釜山市 및 거의 모든 道教育委員會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의 行政業務는 初等教育課와 中等教育課에 부과되고 있거니와, 이것은 法令上으로는 위배되지만 現代教育行政의 專門的管理的 原理에는 부합되는 것이다.

C. 司書教師管理에 관련된 問題

1. 240 時間 이상의 圖書館學講習을 이수한 者를 有資格圖書館擔當教師라고 볼 때, 有資格者를 갖춘 學校圖書館數는 最大限으로 보아 483개 館에 불과하다. 이 수효는 初中等學校 總數의 5.9%, 그리고 圖書館 總數의 11.3%에 해당하는 것이다.

2.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에는 各級學校가 1人 이상의 司書教師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文教部는 지금까지 33명의 司書教師 T/O를 配定하고 있을 뿐이다.

3. 司書教師의 法的地位가 그 資格要件에 비하여 格下된 상태에 있으므로 上記 1項에서 言及된 司書教師의 不足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各種 教育機關에서 배출된 有資格司書教師의 數는 1,00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¹⁹⁾ 現職에 머물러 있는 數는 그 절반도 되지 않으며, 이는 司書教師를 위한 誘因體制的 不備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司書教師資格取得講習 履修者의 數는 아래와 같다.
※標는 推定數인.

講習機關	延世大	梨花女大	圖協市·道教委	계
人員數	132	300 ※	418	200 ※ 1,050

